

#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의안번호	27
------	----

제출일자 : 1998. 8. 22.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 개정이유

-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인력 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 행정기구중 기능쇠퇴·유사중복기구 등을 통합하여 대과주의를 실현하고
- 의사결정 단계 축소를 위하여 계제를 폐지하는 등 지방행정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전환하므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 주요골자

- 구조조정 : 14실과 ⇒ 11실과 (△ 3실과)
- 조정내역
  - 폐 지 : 2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 통·폐합 : 환경위생과 + 도시과 ⇒ 도시환경과
  - 명칭변경 : 내무과 민원분야 + 지적과 ⇒ 종합민원실
- 관련조례를 부칙으로 개정함 : 17개조례
  -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실과 명칭변경
  - 계제 폐지에 따른 용어정정 등

## ■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 경남도 행정 12200 ~ 406 ('98. 6. 22)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과의 설치)** 거창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환경과를 둔다.

**제3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통제
2. 예산편성 운영 및 재정운영 총괄
3. 군 행정의 감사 및 직무감찰
4. 법제, 소송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경영행정에 관한 사항

**제4조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보계획의 수립·시행
2.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제5조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업무의 총괄 관리
2. 지적공부 및 건축물관리대장 보존관리
3.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 이동정리
4.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부동산에 관한 업무
5. 생활현장 민원 처리

**제6조 (내무과)** 내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구역에 관한사항
2. 직제·정원·인사에 관한 사항
3. 선거 및 국민투표

4. 공무원의 교양과 복리
5. 행정정보화 및 행정통신 현대화 추진
6. 민방위 및 병무에 관한 사항
7.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사회진흥운동에 관한 사항
8. 거창사건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제7조 (재무과)**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2.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3.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제8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대상자 및 어려운 군민 구호, 생계지원 총괄
2.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
3. 여성복지 행정의 종합
4. 민·관 자원봉사업무 총괄
5. 위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 (산업과)** 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식량작물의 증산장려 및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4. 원예 및 특용작물의 증산 장려
5. 축산업 육성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제10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중소기업 및 노동에 관한 사항
3. 지역 산품의 시장개척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4. 광공업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5.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제11조 (산림과)** 산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산 및 생활주변 녹화 계획의 수립 실시
2. 산림자원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3. 산림보호 및 야생조수 보호

**제12조 (건설과)**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건설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재난 종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 3.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 4. 도로·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국토이용 및 도시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 2. 관광 및 온천 개발에 관한 사항
- 3.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 4.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14조** (실·과장 직급 등) 실·과장의 직급과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 개정) ①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기획계장"을 "기획담당"으로 한다.

② 거창군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행정계장"을 "행정담당"으로 한다.

③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사회진흥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한다.

④ 거창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청소년업무 담당계장"을 "청소년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지적, 도시과장"을 "종합민원실장, 도시환경과장"으로 한다.

⑥ 거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부동산중개업무담당계장"을 "부동산중개업무담당"으로 한다.

⑦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사회보장계장"을 "사회보장담당"으로 한다.

⑧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환경사업소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⑨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지역경제계장"을 "지역경제담당"으로 한다.

⑩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교통행정계장"을 "교통행정담당"으로 한다.

⑪ 거창군양수기대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산업경제계장"을 "산업경제담당"으로 한다.

⑫ 거창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도시과장”을 “도시환경과장”으로 하고, 제8조 제2항중 “담당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⑬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담당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⑭ 거창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주택계장”을 “주택담당”으로 하고, “도시과장”을 “도시환경과장”으로 한다.

⑮ 거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중 “가족보건계장”을 “가족보건담당”으로 한다.

⑯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를 “둔다”로 한다.

⑰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 거창군사무의 읍·면 위임사무 ] 중 사회진흥과란 및 환경위생과란을 삭제하며, 보건소란 다음에 수도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소관별란의 “지적과”를 “종합민원실”로 “도시과”를 “도시환경과”로 하며, 내무과란의 제13호를 삭제하고 종합민원실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산업과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도시환경과란에 제12호를 삭제하고, 건설과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도시환경과란에 제12호 내지 제18호를 다음과 각각 같이 신설한다.

소 관 별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도사업소	1. 간이상수도의 관리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4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종합민원실	2.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 (도내 주소변경 등록에 한함)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산 업 과	3.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의한 융자금 상환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제8조
건 설 과	5. 주민부담금 30%이상인 공사 집행	
도시환경과	12. 청소인부 및 청소차량 관리·운영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9조
	13. 특별청소지역내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6조
	14. 분노 불법투기 단속	수질환경보호법 제29조
	15. 폐기물 투기 지도 단속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30조 동시행규칙 제13조
	16.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17. 분노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 공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건축법 제71조 동시행규칙 제117조
	18.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신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 신 · 구 조문 대비표(부칙)

현 행	개 정
<p>(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6조 (간사)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u>기획계장</u>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6조 (간사)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u>기획담당</u>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한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거창군민상조례) 제12조 ② 간사는 내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u>행정계장</u>이 된다.</p>	<p>(거창군민상조례) 제12조 ② 간사는 내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u>행정담당</u>이 된다.</p>
<p>(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② 간사는 <u>사회진흥과장</u>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p>	<p>(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② 간사는 <u>문화공보실장</u>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p>
<p>(거창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7조 ② 간사는 <u>청소년업무 담당계장</u>으로 한다.</p>	<p>(거창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7조 ② 간사는 <u>청소년업무 담당</u>으로 한다.</p>
<p>(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2조 (구성) ③위원중 재무 <u>지적, 도시과장</u>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2조 (구성) ③위원중 재무 <u>종합민원실장, 도시환경과장</u>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거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u>부동산중개업무 담당계장</u>이 된다.</p>	<p>(거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u>부동산중개업무 담당</u>이 된다.</p>

현행	개정
<p>(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3조 (회계공무원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금 출납공무원은 군의 <u>사회보장계장</u>으로 한다.</p>	<p>(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3조 (회계공무원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출납명령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군의 <u>사회보장담당</u>으로 한다.</p>
<p>(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33조 (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 <u>환경사업소장</u>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33조 (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 <u>수도사업소장</u>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회계공무원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지역경제과장, 출납공무원은 <u>지역경제계장</u>으로 한다.</p>	<p>(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회계공무원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지역경제과장, 출납공무원은 <u>지역경제담당</u>으로 한다.</p>
<p>(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회계공무원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지역경제과장, 자금출납 공무원은 <u>교통행정계장</u>으로 한다.</p>	<p>(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회계공무원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지역경제과장, 자금출납 공무원은 <u>교통행정담당</u>으로 한다.</p>
<p>(거창군양수기대부조례)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읍면장 책임 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u>산업경제계장</u>이 된다.</p>	<p>(거창군양수기대부조례)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읍면장 책임 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u>산업경제담당</u>이 된다.</p>

현행	개정
<p>(거창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 제2조 (구성) ③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u>도시과장</u>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8조 (간사 등) ② 간사는 공원업무 <u>담당계장</u>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p>	<p>(거창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 제2조 (구성) ③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u>도시환경과장</u>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8조 (간사 등) ② 간사는 공원업무 <u>담당</u>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p>
<p>(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온천업무 <u>담당계장</u>이 된다.</p>	<p>(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온천업무 <u>담당</u>이 된다.</p>
<p>(거창군건축조례) 제9조(간사 및 서기) ② 간사는 <u>주택계장</u>이 되며 서기는 <u>도시과장</u>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p>	<p>(거창군건축조례) 제9조(간사 및 서기) ② 간사는 <u>주택담당</u>이 되며 서기는 <u>도시환경과장</u>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p>
<p>(거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구성)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u>가족보건계장</u>이 된다.</p>	<p>(거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구성)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u>가족보건담당</u>이 된다.</p>
<p>(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 제4조 ①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u>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u>.</p>	<p>(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 제4조 ① 사무소에 소장을 <u>둔다</u>.</p>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별표 1]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사무

소 관 별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현 행	개 정 (안)		
도시환경과	수도사업소	1. 간이상수도의 관리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4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지 적 과	종합민원실	1.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6
내 무 과	“	2.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 (도내 주소변경 등록에 한함)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사회진흥과	산 업 과	3.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 관리조례에의한 융자금 상환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 관리조례 제8조
사회진흥과	건 설 과	5. 주민 부담금 30%이상인 공사 집행	
환경위생과	도시환경과	12. 청소인부 및 청소차량 관리·운영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 9조
“	“	13. 특별청소지역내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 6조
“	“	14. 분뇨 불법투기 단속	수질환경보호법 제29조
“	“	15. 폐기물 투기 지도.단속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 30조 동 시행규칙 제13조
“	“	16.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른 제16조
“	“	17. 분뇨정화조 설치 및 준공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른 제10조, 제11조, 건축법71조 및 동시행규칙제 제117조
“	“	18.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신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른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73조